

##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

대법원 제3부, 1990. 5. 25. 판결 90누295. 파기환송

### 【사건명】

유족보상금지급 청구 부결처분 취소

### 【판시사항】

위암으로 인한 사망이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"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"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

### 【판결요지】

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,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, 망인의 공무 수행상의 과로가 그에게 위암을 발병케 하였다거나 급속히 악화시켜서 생명을 단축시켰다고 불만한 자료가 없다면, 일반적으로 과로가 질병의 발생,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위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위 망인의 위암으로 인한 사망이 그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할 수 없다.

### 【참조조문】

공무원연금법 제61조

### 【참조판례】

대법원 1987. 4. 14. 86누840 판결

1990. 2. 29. 89누4376 판결

### 【당사자】

원고, 피상고인 윤○○

피고,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

**【원심판결】**

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. 11. 30. 89구6817 판결

**【주문】**

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.

**【이유】**

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 조○○은 전북 임실군 교육청 산하 ○○초등학교 교사로서 근무 하던 중 위암이란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8. 7. 21. 사망하였다.

위 망인은 1988. 3. 2. 위 ○○초등학교에 부임하여 6학년 2반 담임을 맡은 외에 원심판시 내용과 같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하루도 결근하지 않고 직무에 충실하였고, 평소 건강한 편으로 1988. 5. 경 실시한 건강진단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정상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암이 발병할 무렵의 과로가 다른 원인과 함께 위 암을 발생케 하였거나 이를 자연악화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시하고 있다.

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,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당원의 일관된 견해인 바(당원 1987. 4. 14. 선고, 86누840 판결 ; 1990. 2. 29. 선고, 89누4376 판결),

이 사건에 있어서 위 망인의 사인은 위암이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 망인의 과로가 위 망인에게 위암을 발생케 하였다거나 급속히 악화시켜서 위 망인의 생명을 단축시켰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으며, 일반적으로 과로가 질병의 발생,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위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위 망인의 위암으로 인한 사망이 위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(망인은 1988. 6. 29. 위암으로 진단받은 후 23일 만에 사망하였다).

결국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⚡